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15 - 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비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 제26042호, 시행 2015.1.6.)의 개정과 관련하여 조례 내용 일부를 개정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를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로 개정함(안 제4조제2호)

나. 종전의 「계약직공무원규정」 및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은 폐지되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삭제하도록 함(안 제4조7호)

다.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문구를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3, 0107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행정지원과(☎ 02-901-6324, FAX 02-901-6319, E-mail : ceylon@gangbu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